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0. 19 선고 2016가단4186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

재판경과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4. 19 선고 2017나5094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0. 19 선고 2016가단41863 판결

전문

원고1. A

2. B

피고에이제이렌터카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8. 17.

판결 선고 2017. 10. 19.

주문

1. 피고는 원고 B로부터 2,99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B에게 별지 기재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B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A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원고 B: 주문 제1항과 같다.

원고 A: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청구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B를 대리한 원고 A(원고들은 부부이다)은 피고와 2013. 9. 30. 별지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임대기간은 납품일로부터 36개월, 월 사용료는 709,909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차량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B와 피고는 이 사건 차량 임대기간 만료 후 이 사건 차량을 원고 B가 피고로부터 인수받기로 하는 조건부인수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의 직원은 2013. 11. 22.경 원고 A에게 인수금액이 "2,99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법인인감이 날인된 2013. 11. 21.자 조건부차량 인수계약을 가지고 왔고, 원고 A은 계약을 확인한 후 원고 B를 대리하여 계약서에 원고 B의 인장을 날인하였다(위 계약서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을 이하 '이 사건 인수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자동차의 임대기간은 2016. 9. 말경 만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 A은 이 사건 인수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본안심리를 거쳐서 판명되어야 할 사항이므로(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44394 판결 등 참조), 원고 A의 주장은 본안에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인수계약에 따라 원고 B로부터 인수금액 2,99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B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인수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고 A은 피고에 대하여 원고 B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법적 권리가 없으므로, 원고 A의 청구는 이유 없다(원고 A은 이 사건 인수계약에 따르면 차량 인수자는 원고 B 또는 원고 B의 직계가족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자신도 이 사건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 A은 원고 B의 직계가족이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 A은 자신이 아니라 원고 B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구하고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인수금액은 12,990,000원인데, 이 사건 인수계약은 계약의 중요부분인 인수금액에 관한 피고의 착오로 인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인수계약상 인수금액에 대하여 피고에게 착오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가 이 사건 인수계약 체결시 착오를 일으켰다고 하더라도,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으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하는 것인바,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499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이 사건 인수계약서를 직접 작성, 출력하고 피고의 법인인감을 날인한 다음 원고 B의 날인을 받은 점, 이 사건 인수계약서상 인수금액란은 매우 인식하기 쉽게 표기되어 있는 점, 피고는 1988. 6. 3. 설립된 자동차 대여사업자로서 전문성과 체계적인 업무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착오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달리 원고 B가 피고의 착오를 알고 이용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러한 점에 있어서도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 B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원고 A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전서영

별지